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21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송재봉 · 박 정 · 최혁진
문정복 · 강경숙 · 박홍배
이연희 · 이광희 · 민병덕
김남희 · 이용선 · 이수진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조치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정착과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남북합의서의 이행 보장 및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반행위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경우

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구체적인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거나,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협조를 요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성기 방송의 중지 또는 확성기 방송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철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각매개물(게시물)의 철거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살포 행위의 제지
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u>국민의 생명·신체에</u>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 ----- <u>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u> 해치거나,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하여서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협조를</u>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협조하여야</u> 한다.	② ----- ----- ----- ----- ----- <u>다음 각 호에</u>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 -----.
<u><신 설></u>	----- <u>이에</u>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u>확성기 방송의 중지 또는 확성기 방송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철거</u>
<u><신 설></u>	2. 제1항제2호에 따른 <u>시각매개</u>

<u><신 설></u>	<u>물(게시물)의 철회</u>
<u><신 설></u>	<u>3. 제1항제3호에 따른 살포 행</u> <u>위의 제지</u>
	<u>4. 그 밖에 예방을 위한 조치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